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5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법인 지원(안 제4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4. 6. 5.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범인 지원(안 제4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에서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지원 등)에서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홍보 및 교육)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자료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현재 우리 군은 관외에 소재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¹⁾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참고]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내역

사업명	연도	사업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022년	30,000천원
	2023년	30,000천원
	2024년	30,000천원

1)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는 영월군에 소재한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담당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붙임 2]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 은 미 의원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5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창열, 남진삼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정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2024. 5. 7. ~ 2024. 5. 27.(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4. 24. ~ 2024. 5. 2.(9일간), 의견 없음.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평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제정지원 등)

-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25,000	25,000	30,000	30,000	30,000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 기획실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065